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 전화번호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사건 61100 - 11110

2008 . 6 . 20 .

수      신  
제      목      불기소이유통지

발   신      서울중앙지방  
검   사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2008    형    제    59574    호
② 고    소    인    성    명	참여연대
피    의    자 (피고소인)	③ 성            명            성명불상
	④ 주민등록번호      000000-*****
⑤ 죄                    명	증거인멸
⑥ 처    분    년    월    일	2008 .    6 .    12 .
⑦ 처    분    요    지	불기소(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⑧ 불    기    소    이    유	별첨과 같음
⑨ 비                    고	

## 사 실 과 이 유

본건 피의 사실의 요지는

1.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경영지원 총괄본부 성명불상 임직원은 한겨레 신문 2008. 1. 16.자 기사 내용과 같이 삼성비자금의혹 관련특별검사(이하 '삼성 특검'이라 한다)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회사 내 모든 사업장에 보안지침을 내려 2001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 구조조정본부 관련 자료, 이건희, 이학수, 이재용 등의 이름이 들어간 문서, 명함철, 근무수첩, 각종 대외비 문서 등을 파기하도록 하고,
2. 삼성SDI 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 한다) 전략기획팀 성명불상 임직원은 한겨레 신문 2008. 1. 22.자 기사 내용과 같이 삼성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사원들을 대상으로 '특검 대비 교육'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방송이나 파트장의 통보가 있으면 작업 종이거나 책상 위에 놓은 모든 문서자료를 챙겨 사무실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삼성 사내 네트워크인 '싱글'에 남아 있는 문서를 지우고, 컴퓨터 내의 모든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고
3.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성명불상 임원들은 삼성전자, 삼성SDI 등의 증거인멸을 총괄하면서 삼성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여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

등 대주주, 임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 수사한 결과

○ 본건 고발인들은 삼성 그룹 전략기획실의 주도 아래 삼성전자, 삼성SDI 등에서 삼성 특검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 내지 은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 한겨레신문에 기사를 작성한 고제규 기자는 삼성전자의 증거인멸 지시 관련 보안지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 참여연대 소속 박원석으로부터 삼성그룹 계열사에 근무하는 그의 지인이 증거인멸 행위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며,
- 또한,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삼성그룹은 이미 에버랜드 등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내지 위증을 시도한 바가 있다고 하므로, 이들을 비추어 보면 삼성 그룹에서는 조직적으로 삼성 특검 수사에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본건 고발을 하였다고 주장

○ 본건 고발의 근거가 된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 고제규 기자는 동료 기자의 이메일로 삼성전자, 삼성SDI 등의 증거인멸 관련 제보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삼성전자의 증거인멸 지시 관련 보안지침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함

- 참여연대 박원석은 자신의 지인이 삼성의 증거인멸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지인이 알고 있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직원이 자신의 지인에게 삼성카드에서 삼성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을 말하였고 자신은 위 내용을 지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삼성카드 직원이 조사에 협조하여 줄 수 있는지 알아본다고 하였다가 다시 조사에 협조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
- 고발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삼성그룹은 계열사별로 일상적인 보안 점검을 하는 것이며, 특정 자료들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삼성SDI의 넷디스크 시스템은 작업보안과 백업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개발해 온 것이라며 올해 들어 전사 차원으로 확대한 것인데 그 시기가 삼성특검과 맞물린 건 우연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한겨레 신문에 반론제기 형식으로 보도된 바 있음
-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 인사팀 총무보안 부서에서 근무 중인 이동근은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처럼 보안지침을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자료 파기를 지시한 적이 없고 2008. 1. 11. 저녁 삼성전자의 기흥사업장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직원들을 출근 시켜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반도체 제조공장이 있는 곳으로 삼성특검 수사와는 무관하며 삼성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사실도 없다면서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과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삼성SDI 혁신팀 부장으로 근무 중인 이진형은 기업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사무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2003년부터 계속하여 '사내업무 문서 정비활동'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를 사내방송, 메일 공지, 집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전파교육을 시킨 적은 있으며,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개인별 PC에 회사 자산인 업무자료와 개인 자료가 혼재하여 보관되어 있어 회사 업무자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7. 12.경부터 '넷디스크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회사 업무용 자료를 개인별 PC가 아닌 넷디스크에 보관하도록 한 것이지 삼성 특검 수사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부인
-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등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내지 위증을 시도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삼성 특검의 수사결과 삼성화재를 제외하고는 삼성그룹 측에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바 있음
- 한겨레신문 기사 및 고발인 진술 이외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고발인도 삼성그룹 또는 삼성계열사에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인은 없다고 진술

○ 한겨레 신문 기사 및 고발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하고 달리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혐의없음

주문과 같이 결정함

무고판단 : 본건 고발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무고혐의 인정키 어려움

